

#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(구역)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

의안  
번호 1730

제출년월일 : 2008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1. 제 안 사 유

- 원곡동 원곡연립2단지는 1981년에서 1995년까지 준공된 노후 건축물들로서 2006년 3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재건축하도록 판정받았으며, 2010 안산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1단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
-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, 녹지,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 및 추가확보 후 관련법 및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,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구역)을 주민 제안하였습니다.
- 동 계획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관기관 협의를 실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정비구역 결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m <sup>2</sup> 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설	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	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38번지 일원	-	증)64,810.0	64,810.0	-

나. 정비계획 결정조서

1) 토지이용계획

구분	면적(m <sup>2</sup> )	비율(%)	비고	
합계	64,810.0	100	정비구역	
공동주택용지	55,500.7	85.6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
종교용지	1,286.0	2.0	성당	
공공시설용지	소계	8,023.3	12.4	기반시설 대체
	소공원	1,448.7	2.2	"
	소공원 (가로공원)	4,026.2	6.2	"
	도로	2,548.4	3.9	"

2) 건축물의 주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

구역명	구분	계획내용	비고
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(공동주택)	주용도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기존세대수 : 996세대 계획세대수 : 1,095세대 (99세대 증가) 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한계선 2-3m 적용
	건폐율	24.92%	
	용적율	229.92%	
	최고높이	평균15층 (최고 18층, 최저 11층)	
	건축한계선	광로 1-1 변 : 6m 대로 3-1 변 : 2m 중로 1-13 변 : 2m 중로 2-6 변 : 3~6m	
	전체연면적	194,137.85m <sup>2</sup>	
종교시설	주용도	종교시설	-
	건폐율	60%이하	
	용적율	250%이하	
	최고높이	4층	
	건축한계선	광로 1-1 변 : 3m 중로 2-6 변 : 3m	
	색채 및 형태	공동주택과 조화되는 색채 및 형태로 계획	

3) 공동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

구분	관리 사무소	어린이 놀이터	근린 생활시설	주민 운동시설	경로당	주민 공동시설	보육시설	문고
면적(m <sup>2</sup> )	150	1,400	8,850	850	200	180	220	100

3. 검토의견

- 원곡동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은 상위계획인 2010 안산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범위 내인 용적률 229.92%, 건폐율 24.92%, 층수는 평균층수 15층(11~18층)으로서 기본계획에 적합하며
- 관련 실무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, 건설과 협의 내용중 연수원 사거리 및 초지운동장사거리 육교설치, 연수원사거리(연수길 - 양지말길) 및 협성연립 삼거리(원선길 - 풍전길) 고가(지하)차도 설치에 대한 재검토 사항이 있으나 추진위원회에서는 비용과다 및 필요성이 미미한 사유로 수용불가 의견이 있어 조정 중에 있습니다. 아울러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관계법령 발췌내용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
제4조(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) ①시장·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·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,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하여야 한다.

5. 첨부자료 : 원곡연립2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(안) 요약 1부. 끝.

## 안산시의회 의견서

원곡연립2단지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(구역)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산시의회 의견을 제시함.

- 재건축정비지역 주위에 환승역세권 개발, 돛구장건설 등 도시의 여건 및 법, 제도의 변화에 순응하여 조망권, 일조권 확보와 녹지 공간 확대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더 나아가 2단계 종상향으로 층고제한을 완화하여 주변지역과 부합될 수 있는 스카이-라인 구축으로 도시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, 재건축 사업에 따른 주택전세대란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기 바람.